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-11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01. 19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초구 반포동 32-5번지 일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9,594.4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서초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안기성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9, 6층 (반포동, 대영빌딩)
4.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일 : 2018.01.18.
5. 관리처분계획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 - 1) 대지면적 : 38,583.16㎡
 - 2) 규 모 : 지하2층 ~ 지상34층 아파트 11개동 829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 - 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전용면적기준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				
	계	49㎡	59㎡	84㎡	99㎡	112㎡	130㎡	150㎡
계	829	73	71	237	151	124	140	33
토지등소유자	456	-	-	24	146	123	132	31
보류시설	-	-	-	-	-	-	-	-
일반분양	257	2	26	213	5	1	8	2
임대	116	71	45	-	-	-	-	-

다. 신설 정비기반시설 명세 등 : 도로 11.24㎡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완료

6. 주요변경내용 : 수입·지출 변경 및 조합원 부담금 변경 등

7.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02-2155-7342)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